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18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 박성훈·백종헌·곽규택

안상훈 • 우재준 • 고동진

조배숙 · 임이자 · 서지영

이상휘 • 조지연 • 박충권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"공단"이라함)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,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. 이와 관련, 매출액 등 과세정보는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라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수집・활용할 수 있으므로, 현행법에 관련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5제2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공단은 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ㆍ제8항, 제48조,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1.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
- 2.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
- 3. 개업일 · 휴업일 및 폐업일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5(재난 시의 신속 지원)	제22조의5(재난 시의 신속 지원)
(생 략)	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승)
<u>&lt;신 설&gt;</u>	② 공단은 재난 시 소상공인에
	대한 신속 지원을 위하여 필요
	한 경우 「국세기본법」 제81
	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
	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
	<u>• 제8항, 제48조, 제49조 및 제</u>
	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
	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
	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
	라 부여받은 다음 각 호의 정
	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
	<u>있다.</u>
	1.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
	<u>출액</u>
	2.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
	3.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